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며
- 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산의 취득 -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

○ 사업규모

| 구 분 | 위 치 | 매입면적(m ²) | 사업비(백만원) | | 비 고 |
|------|------|-----------------------|----------|----|-----|
| | | | 금액 | 재원 | |
| 대체취득 | 도내일원 | 50,000 | 2,100 | 도비 | |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투자계획 : 2009년 - 2,100백만원

나. 재산의 취득 -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 · 이전

○ 위 치 : 제천시 명지동 국민임대주택단지

○ 교환시기 : 2008. 9 ~ 2009. 12

| 구 분 | 사업규모(m ²) | | 사 업 비(백만원) | | | 비 고 |
|------------------------|-----------------------|-----|------------|----|-------|----------------|
| | 부지 | 건물 | 계 | 국비 | 도비 | |
|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 센터 | 2,774 | 826 | 1,920 | - | 1,920 | 지하 1층 지상 2층 |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투자계획 : 2009년 - 1,920백만원

4. 검토의견

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 대체취득

2009년도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 대체취득은 21억원 정도의 보존부적합 도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50,000m²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되 매입대상 토지는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은 도유지 중 소규모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 등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도에서는 그 매각 대금으로 도유재산의 집단화나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비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그리고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에 대해 매입대상토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재원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가 됨.

이와같이 본 계획안은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을 원활히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없음.

나.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본건은 제천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는 1985년도에 건축하여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형소방차량 입고가 불가능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며

안전센터를 현위치에 재건축하지 아니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천 제2산업단지와 강저 택지개발지구가 소재한 명지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같이 본 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할지역내의 변화된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